

---

#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

## FAQ

---

2016. 4

한국공인회계사회  
재무보고연구실

## 목 차

1. 실무지침 문단 2 수주산업 용어의 정의에서 '건설업, 조선업 등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서도 실무지침이 적용되는지? ..... 3
2. 상기 질문 1에서 기술한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수익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도 실무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 5
3. 핵심감사항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 6
4. 3월말 결산법인 또는 6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실무지침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 7

1. 실무지침 문단 2 수주산업 용어의 정의에서 ‘건설업, 조선업 등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서도 실무지침이 적용되는지?

- 수주산업 핵심감사제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수주산업 회계정보 공시 강화와 함께 추진되었음. 따라서 실무지침은 수주산업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적용함
- 아래 표에서는 수주산업 회계정보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및 문단을 요약하였으며, 실무지침 문단 2의 “수주산업”이란 아래 표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및 문단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문단 한45.1 및 한45.4)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건설계약
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문단 한21.1)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문단 14) 언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에서 정의하는 건설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문단 14의 모든 기준이 건설 진행 중에 계속적으로 충족되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계약(예: 아파트 분양공사)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16.64 및 16.67) * 문단 16.47과 문단 16.28 언급	문단 16.47 본문에 따른 공사진행률(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문단 16.28에 따른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건설형 공사계약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한129.1 및 한129.4) * 조기적용 시 고려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

- 실무지침은 위 표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수익금액을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되며, 건설업, 조선업 등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음
- 위 표의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1절에 따라,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용역계약)에는,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무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상기 질문 1에서 기술한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수익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도 실무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 실무지침에서는 적용 대상을 판단할 때에 사용하는 별도의 양적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 1에서 기술한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수익금액을 인식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무지침이 적용됨
- 중요성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위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실무지침의 전체 또는 일부 절차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임
- 감사인은 실무지침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보고기간의 수익금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의 총 도급금액, 총 예상투입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추정치의 불확실성이 유의적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해야 함
- 감사인은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실무지침의 전체 또는 일부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과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 '회계정보 공시 강화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실무지침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조사항문단에 핵심감사항목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음

3. 핵심감사항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결정한 경우, 감사인은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 핵심감사항목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 결정한 경우
  - 실무지침 문단 13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논리적 근거와 관련 감사증거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해야 함
- 그러나 이 경우 감사인이 해당 항목을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거 또는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음
- 다만,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전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기재할 핵심감사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하여야 함

4. 3월말 결산법인 또는 6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실무지침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 실무지침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포함)부터 적용함
  - 다만, 검토보고서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검토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함
- 따라서 3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1분기('16. 4. 1. ~ 6. 30.)에 대한 검토보고서부터, 6월말 결산법인은 2016년 7월 1일에 시작하는 1분기('16. 7. 1. ~ 9. 30.)에 대한 검토보고서부터 적용됨